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0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제니스투자자문㈜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32조 및 제33조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'자본시장법 시행령')」 제3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및 미제출에 대해 제니스투자자문㈜에 과태료 1,280,000,000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(1)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제출 및 미제출

□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('월별 업무보고서')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,

○ 제니스는 20xx년 xx월~20xx년 xx월 기간의 분기별, 월별 업무보고서상 '3. 재무에 관한 현황'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(총 ○회)

나. 근거법규

○ 「자본시장법」 제32조(회계처리) 제1항

○ 「자본시장법」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 제1항 및 제4항

○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6조(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) 제1항 및 제3항